

#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163호
----------	---------

제출년월일 2023. 1. 20.  
제출자 유매희 의원

## 1. 제안이유

- 2022. 09. 21일자 김포시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단 신설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단장 및 일부 누락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조정하며, 「법제처 제공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목적조항에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조정함. (안 제1조)
- 나. 「법제처 제공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목적조항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칭을 입안기준에 맞게 삭제함. (안 제1조)
- 다.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 정비. (안 제2조)
  - 2022. 09. 21일자 김포시 조직개편에 따른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이 신설되어 단장 추가 (안 제2조2호)
  -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포함 (안 제2조6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김포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포함 (안 제2조7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및 현행 규정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부서협의 : 해당없음

2) 관련부서 : 의회사무국

#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를 “제51조”로,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김포시의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를 “김포시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장”을 “국장, 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
6.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자 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김포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u>김포시의회</u>(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범위) <u>의회</u>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시장의 보조기관중 <u>국장</u>, 담당관, 과장급</li> <li>3. 법 113조 내지 117조의 규정에 의한 <u>소속행정기관장</u> 및 읍·면·동장</li> </ol> <p>&lt;신설&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생략)</li> </ol>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1조 (목적) ----- -제51조----- ----- <u>김포시의회</u> ----- ----- ----- ----- -----.</p> <p>제2조 (범위) <u>김포시의회</u>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 <u>국장, 단장</u>----- -----</li> <li>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u>소속 행정기관장</u></li> <li>4.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u>하부행정기관장</u></li> <li>5. (현행 제4호와 같음)</li> <li>6.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u>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u></li> <li>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u>출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김포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u></li> </ol>

## 지방자치법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1. 4.] [경기도김포시조례 제693호, 2008. 1. 4., 일부개정]

경기도 김포시(의회사무국), 031-980-2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
3. 법 113조 내지 11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및 읍·면·동장(개정 2003.12.30, 2008.1.4)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3.12.30 조례 제4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②김포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동·면장”을 “읍·면·동장”으로 한다.

[해당외 항목 생략]

### 부칙 <김포시의회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2008. 1. 4조례 제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